

대전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109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10981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1. 23 선고 2021가합3090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복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변론 종결 2024. 9. 26.

판결 선고 2024. 10. 24.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1. 23. 선고 2021가합309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망 D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망 D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며, 원고에게 248,141,3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금전 지급부분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제1심판결의 주문과 같이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또한 추가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이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로 의제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추가한 부분은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고가 명시적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5면 제19 내지 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3 부동산은 'S 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22. 1. 28. 수용을 원인으로 보령시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보령시는 2022. 1. 18. 이 사건 3 부동산 및 그 지장물의 수용보상금 596,331,150원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 및 T, U를 망 D의 상속인으로 보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년 금 제26호로 피공탁자 제1심 공동피고 B 255,570,492원, T 170,380,329원, U 170,380,329원으로 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3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로서 제1심 공동피고 B와 T, U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타채5371호, 수원지방법원 2022타채102852호),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V)에서 압류·추심채권자인 피고에게 합계 354,094,344원(= 101,097,270원 + 101,097,270원 + 151,899,804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카합5011호)으로 인하여 피고는 위 배당금 354,094,344원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 제6면 제7행의 "36, 37호증"을 "36 내지 43호증"으로 고친다.

○ 제7면 제11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망 D에 대하여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1심 공동피고 B와 망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재산처분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 제8면 제12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오직 제1심 공동피고 B만이 돈을 차용하고 계를 조직하는 등 금전거래 관계에 있었고, 망 D의 경우 원고에게 2021. 9. 17.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해 줄 무렵 이전에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제1심 공동피고 B의 위와 같은 고액의 대여금 및 계금 채무의 부담행위는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망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금전 대여 경위와 통장 거래내역, 제1심 공동피고 B의 증언 등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B과 망 D은 부부로서 원고로부터 빌린 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2018년경부터 남편 W의 계좌를 통해 망 D 명의의 계좌로 일부 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 28호증 참조), 관련 사건인 대전고등법원 2024나10998호 사건에서도 제1심 공동피고 B과 망 D은 채권자 L, M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차용증은 제1심 공동피고 B과 망 D이 그 전에 부담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차용증 작성일인 2021. 9. 17.경 정산 내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차용증 작성으로 인하여 망 D의 채무가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3면 제12 내지 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망 D이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만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 B과 망 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 B과 망 D은,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4.경에는 둘째 아들의 아파트 구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공동피고 B은 이 법원에서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목적과 경위에 대하여 '헌 집을 사고 이를 고쳐주는 사업을 하거나, 갯돈을 태워주는 데에 빌린 돈을 사용했다.', '집을 짓고 고치고 해야 하므로 돈이 없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증언한 점, ③ 제1심 공동피고 B과 망 D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제1심 공동피고 B과 망 D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력을 회복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제1심 공동피고 B과 망 D의 채무상태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피고로서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는 2008년경부터 오랜 시간 동안 제1심 공동피고 B과 망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다가 2020년 내지 2021년경에 이르러 담보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연달아 체결한 점, 제1심 공동피고 B은 이 법원에서 '피고가 지역에서 제1심 공동피고 B과 망 D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무렵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B과 망 D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나 그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그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4면 제8 내지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같은 면 각주 5번을 삭제한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채무초과 상태인 제1심 공동피고 B과 망 D에게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 점, 제1심 공동피고 B과 망 D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각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각 경매절차에서 여러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한 점,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들이 채권가압류 등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보령시가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자 채권자 L, M은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다른 배당절차 및 이 사건 3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를 비롯하여 제1심 공동피고 B 및 망 D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이미 하였거나 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을 넘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5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 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 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 제16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3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3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3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에게 위 배당절차에서 취득한 배당금 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봉길

판사장정태

판사이해성

별지